

**생거(SANGER) 시의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급수 서비스 중단 규정**

본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급수 서비스 중단 규정은 여기 규정된 조항에 따라 시에서 요금 미납에 대해 가정용 급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 규정과 시의 다른 모든 조례, 정책 또는 규칙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

I. 규정의 적용; 연락처 전화번호: 본 규정은 요금 미납에 대한 가정용 급수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시에서 제공하는 다른 유틸리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시 규정 및 절차는 상업용 및 산업용 수도 서비스 계좌에 계속 적용된다. 수도 요금 납부 관련 및 급수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 정해진 잠재적 대체 납부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면 전화, (559) 876-6300(옵션 1 선택)의 시청에 연락할 수 있다.

II.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급수 서비스 중단:

A. 청구서의 발행, 납부 날짜 및 납부: 급수 서비스 요금 청구서는 그 앞 달 제공된 급수 서비스에 대해 매월 초에 각 소비자에게 발송된다. 수도 요금은 수도 요금 청구서에 정해진 날짜 당일("납부일") 또는 그 전에 납부해야 한다. 수도 요금은 1700 7<sup>th</sup> Street, Sanger, CA 93657 에 있는 시청의 서비스 관리 부서에서 또는 시의 유틸리티 납부 사이트인 [www.ci.sanger.ca.us](http://www.ci.sanger.ca.us) 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의 서비스 관리 부서에 납부금이 제때 도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책임이다. 청구 요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된다.

1. 정기적인 요금 고지서 발행을 위해 그리고 요금 고지서의 시작, 마감 및 특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수도 계량기값을 읽는다.
2. 계량기로 읽는 서비스 요금 고지서에는 고지서가 발행되는 현재 및 그 전 달의 계량기 측정값, 단위 수, 현재 계량기값을 읽은 날짜와 서비스 기간 등이 표시된다.

B. 연체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육십(60) 일 이상 연체된 소비자에게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소액 미납 계좌: 모든 고지서에 대해 \$35 미만이 미납된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고지서 기간으로 이체되어 추가된다.
2. 연체 통보: 수도 요금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연체 고지서("연체 통지서")가 연체 고지서에 나와 있는 잠정적 단수 서비스 날짜보다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칠(7) 일 전에 급수 서비스

소비자에게 발송된다. 소비자 주소가 급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주소가 아니면 연체 통지서는 급수지 주소 및 “거주자”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지로도 발송된다.

연체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소비자 이름 및 주소;
- b) 연체 금액;
- c) 급수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납부하거나 반드시 다른 납부 방법을 조정해야 하는 마감 날짜;
- d)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 연장에 적용될 과정의 설명. (아래 섹션 III(D) 참조)
- e) 요금 검토 및 연체를 유발하는 요금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접수를 위한 절차 설명 (아래 섹션 IV 참조); 그리고
- f) 소비자가 요금 납부를 연기, 분할 상환 또는 다른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아래 섹션 III 참조)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써 전화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소비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 통지서가 전화로 전달되는 경우 시는 이 규정의 사본과 함께 아래의 섹션 III에 나와 있는 다른 납부 방법 옵션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아래의 섹션 IV에서 설명된 소비자 고지서의 검토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제공한다.

3. 소비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시에서 서면(예를 들어, 수신 불가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또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는 선의의 노력으로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예정 통지서와 함께 이 규정의 사본을 놓아둘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

4. 연체료: 시의 수수료 및 요금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계산하여 연체 통지서의 연체료가 납부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지 않으면 그 소비자의 계좌에 납부 금액에 추가된다.

5. 마감 기한: 수도 서비스 요금은 늦어도 연체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의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시청의 서비스 관리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우편 소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반려된 수표에 대한 통보: 수도 서비스 또는 다른 수도 관련 요금을 내기 위해 보낸 수표가 반려되면 시에서는 그 금액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에서는 직접 인편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거주지에 급수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놓아두려고 시도한다. 반려된 수표 금액 또는 반려된 수표 요금이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급수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그 마감일은 연체료에 나와 있는 날짜보다 빠르지는 않거나, 또는, 과거에 연체 통지서가 발행된 적이 없었으면 반려된 수표가 납부하려고 했던 청구서 날짜로부터 육십(60) 번째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 반려된 수표를 상환하고 반려된 수표의 금액을 납부하려면 미납된 모든 금액을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 직불 카드 또는 지급이 보증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7.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해 급수가 중단된 서비스에 대해 반려된 수표로 지급 처리된 경우:

a) 납부된 수표가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어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었던 계좌가 복원되게 되면, 시에서는 그 수도 서비스를 달력 기준으로 최소 삼(3) 일의 시간을 주고 중단할 수 있다. 소비자의 계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 카드 또는 지급이 보증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미납금을 완납했을 때만 급수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다. 일단 소비자 계좌가 재개되면 그 계좌는 일 년 동안 소비자가 지급 불가 수표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있게 된다. 그 경우 그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 카드 또는 지급이 보증되는 방법만 가능하다.

C. 단수를 금지하는 조건: 시에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정용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1. 건강 관련 조건 -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세입자가 자신의 일차 의료 관리자의 증명서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급수를 중단하게 되면, (i) 생명이 위협하게 되거나, 또는 (ii)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
2. 경제적 어려움 - 소비자가 자신이 수도국의 정기적 고지 주기 안에 수도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 소비자 가족 중 누구라도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 간주한다. (i) 현재 다음 혜택 중 하나를 받는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 Medi-Cal, SSI/주 정부 보충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특수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ii) 소비자가 가족의 연간 수입이 연방 정부 빈곤 수준의 200%보다 적다고 밝히는 경우. 그리고,

3. 다른 납부 방법 조정 - 소비자가 아래 섹션 III의 조항에 따라 할부 상환 계약, 다른 납부 일정, 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납부금 경감 등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D.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조건에 대한 결정 절차: 위 세부 항목 (C)에 설명된 조건을 따르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시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지원 사항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소비자는 세부 조항 (C)(1)의 의료적 문제, 세부 조항 (C)(2)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세부 조항 (C)(3)의 다른 납부 방법 조정에 등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데 필요한 서류를 급수 서비스 중단 예정일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시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이 서류를 검토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삼(3) 일 안에 응답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거나, 또는 납부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위 세부 사항 (C)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벌금과 다른 수수료를 포함한 연체 금액을 다음 둘 중 늦은 날까지 시에 납부해야 한다: (i) 시에서 소비자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통보한 날짜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이(2) 일; 또는 (ii) 연체 통지서에 명시된 서비스 중단 예정일.

E. 저소득 소비자를 위한 특별 규정: 소비자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가족은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미만에 든다고 간주한다. (i) 소비자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현재 다음 혜택 중 하나를 받는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 Medi-Cal, SSI/주 정부 보충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특수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ii) 소비자가 자기 가족의 연간 수입이 연방 정부 빈곤 수준의 200%보다 적다고 밝히는 경우. 소비자가 이 둘 중 하나를 확인하면 다음이 적용된다.

1. 수도 재연결 수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다시 연결해야 한다면, 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의 재연결 수수료는 \$50.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수수료는 실제 비용이 법정 한도 보다 적으면 그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한도는 2020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연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산호세 전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2. 이자의 면제: 시에서는 연체 고지서에 대한 모든 이자 요금을 면제해준다.

F. 집주인-세입자 경우: 아래 절차는 집주인 또는 관리자가 기록상 소비자이며 수도 요금 고지서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개별 계량기로 측정되는 개인 주택, 다가구 연립 주택, 그리고 모빌 홈 공원 등에 적용된다.

## 1. 필수 통보서

a. 시에서는 계좌 연체로 인해 단수가 예상되면 해당 건물이 다가구 연립 주택 또는 모빌 홈 파크인 경우에는 단수 예정일로부터 달력을 기준으로 적어도 십(10) 일 전에,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적어도 칠(7) 일 전에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b. 서면 통지서는 반드시 세입자/입주자에게 현재 연체된 금액을 내지 않고도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는 소비자가 될 권리(아래 세부 항목 2 참조)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세입자/입주자가 소비자가 되는 경우:

a. 시는 각 세입자/입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시의 요건과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입주자에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b. 하지만, 만약 (i) 한 명 또는 그 이상 세입자/입주자가 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앞으로의 계좌 요금을 책임지게 되거나, (ii) 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입주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있으면, 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입주자에게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 만약 특정 기간의 과거 서비스가 시에서 인정하는 신용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면 건물에서의 거주하는 사실과 시에서 만족하는 이튼 월세의 납부도 충족 조건이 될 수 있다.

d. 세입자/입주자가 시의 소비자가 되어 세입자/입주자의 월세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채로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자/입주자는 추후 월세에서 과거 납부 기간 시에 납부했던 모든 합리적 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 III. 다른 납부 방법 조정:

위 섹션 II(D)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섹션 II(C)의 세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시에서는 소비자에게 시에서 검토하여 선택한 다음 대체 납부 방법의 하나를 제공한다.

(i) 아래 세부항 (A)에 따른 미납 잔금에 대한 분할 상환;

- (ii) 아래 세부항 (B)에 따른 대체 납부 일정;
- (iii) 아래 세부항 (C)에 따른 미납 잔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감면;
- (iv) 아래 세부항 (D)에 따른 일시적 지급 연기. 서비스 관리 부서의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은 소비자가 제출한 정보와 문서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경제 상황 및 시의 납부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체 납부 방법을 선택한다.

A. 분할 상환: 시의 정기적 납부 기간 안에 급수 서비스 비용을 낼 수는 없지만, 아래 섹션 II(C)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는 시에서 확인하여 이 대체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시와 분할 상환 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간: 소비자는 아래 세부항 (2)에 명시된 관리비를 포함한 미납 금액을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십이(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소비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십이(12) 개월 이상의 상환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해당하는 관리비와 함께 미납 잔금은 그 상환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져 그 금액이 소비자가 현재 사용 중인 월간 급수 서비스 금액에 더해지게 된다.
2. 관리비: 모든 승인된 분할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계획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시에서 때때로 정하는 금액이 관리비로 소비자에게는 청구된다.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이 세부항 A에 따라 분할 상환될 금액에 시의 마스터 수수료 계획(Master Fee Schedule)에 나와 있는 연간 요금으로 관리비가 정해진다.
3. 계획의 준수: 소비자는 반드시 분할 상환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각 청구 기간에 비용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는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동안에는 모든 추가되는 미납 금액에 대해 추가로 분할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분할 상환 계획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현재 서비스 비용을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내지 않으면, 시에서는 급수 중단을 알리는 최후 통보를 소비자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오(5) 일 후에는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B. 대체 납부 일정: 시의 정기적 납부 기간 안에 급수 서비스 비용을 낼 수 없지만, 위의 섹션 II(C)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는 시에서 확인하여 이 대체 납부 일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미납 금액에 대한 대체 납부 일정 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

1. 상환 기간: 소비자는 아래 세부항 (2)에 명시된 관리비를 포함한 미납 금액을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십이(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소비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십이(12) 개월 이상의 상환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2. 관리비: 모든 승인된 대체 납부 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계획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시에서 때때로 결정하는 금액이 관리비로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이 세부항 B에 따라 분할 상환될 금액에 시의 마스터 수수료 계획(Master Fee Schedule)에 나와 있는 연간 요금으로 관리비가 정해진다.

3. 일정: 소비자와 상담하고 소비자의 재정 한계를 고려한 후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은 소비자가 동의해야 하는 대체 납부 일정 계획을 준비한다. 그 대체 납부 일정은 시에서 설정한 납부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주기적 목돈 납부가 포함되거나, 월간 단위보다 더 자주 납부해야 하는 납부 주기, 또는 월간 단위보다 더 드물게 납부해야 하는 납부 주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조건은 위 세부항 (1)에 따라 미납 잔금과 관리비가 십이(12) 개월로 설정된 납부 일정 안에 모두 완납된다는 조건이다. 동의한 일정은 문서로 작성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4. 계획의 준수: 소비자는 반드시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각 청구 기간에 비용이 적용되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전에 동의한 일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동안 어떤 추가되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도 더 긴 납부 일정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동의한 분할 일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의 현재 서비스 비용을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내지 않으면, 시에서는 급수 중단을 알리는 최후 통보를 소비자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오(5) 일 후에는 소비자의 거주지에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C. 미납 금액의 경감: 시의 정기적 납부 기간 안에 급수 서비스 비용을 낼 수 없지만, 위의 섹션 II(C)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는 시에서 확인하여 이 미납 금액의 경감을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미납한 금액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 및 조치 없이 십(10)%를 넘지 않는 금액만큼 경감받을 수 있다. 단, 그러한 경감이 시의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추가 요금을 초래하지 않는 자금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 경감 비율은 소비자의 경제적

필요성, 시의 재정 상태, 그리고 소비자의 미납 잔금 경감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상환 기간: 소비자는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이 정한 마감일까지 경감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날짜(“경감된 잔금의 납부 날짜”)는 미납된 잔금이 경감된 유효 일로부터 적어도 십오(15) 일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
2. 경감된 잔금 납부 날짜의 준수: 소비자는 반드시 경감된 잔금 납부 날짜 당일 또는 그 전에 경감된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후 매 청구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 전체를 납부해서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가 경감된 잔금 납부 날짜로부터 달력 기준으로 육십(60)일 안에 경감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현재의 수도 요금을 달력 기준으로 육십(60)일 또는 그 이상 연체하면, 시에서는 급수 중단을 알리는 최후 통보를 소비자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오(5)일 후에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D. 임시 지급 연기: 시의 정기적 납부 기간 안에 급수 서비스 비용을 낼 수 없지만, 위의 섹션 II(C)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는 시에서 확인하여 이 대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납부일이 지난 후 최대 육(6)개월까지 임시로 미납된 잔금에 대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시에서는 자체 재량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연기 기간을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다.

1. 상환 기간: 소비자는 아래 세부항 (2)에 명시된 관리비를 포함한 미납 금액을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십이(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소비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십이(12)개월 이상의 상환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2. 경감된 잔금 납부 날짜의 준수: 소비자는 반드시 연기된 납부 날짜 당일 또는 그 전에 경감된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추후 매 청구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 전체를 납부하여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가 연기된 잔금 납부 날짜로부터 달력 기준으로 육십(60)일 안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현재의 수도 서비스 요금을 달력 기준으로 육십(60)일 이상 연체하면, 시에서는 급수 중단을 알리는 최후 통보를 소비자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오(5)일 후에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IV. 이의 제기:

가정용 급수 서비스의 모든 고지서의 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다음 절차를 사용한다.

A. 초기 이의 제기: 소비자에게는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십(10) 일 안에 시에서 청구한 고지서 또는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 요청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그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시청의 서비스 관리 부서에 접수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와 모든 결과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시에서는 그 소비자에 대한 급수를 중단할 수 없다.

B. 연체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위 세부항 A 에 제공된 이의 제기 권리에 추가하여, 연체 통지를 받은 모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그 고지서의 수도 사용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연체 통지 날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적어도 오(5) 일간 연체 통지와 연관된 고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그러한 이의 제기 신청 또는 검토 권리는 위 세부항 A 에서 이의 제기 또는 검토가 요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은 반드시 시청의 서비스 관리 부서에 오(5) 일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와 모든 결과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시에서는 그 소비자에 대한 급수를 중단할 수 없다.

C. 이의 제기 공청회: 위 세부항 A 또는 B 에 따라 접수된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 후에는 시의 서비스 관리 부서 담당 이사 또는 그 지명인(“공청회 담당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날짜가 즉시 결정된다. 소비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와 문제가 되는 수도 요금에 관계된 시의 자료를 검토한 후, 공청회 담당관은 고지서 수도 요금의 정확성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간단한 요약서를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1. 만약 수도 요금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정되면, 시에서는 정정된 청구서를 발행하며 정정된 요금의 납부 날짜는 정정된 요금으로 발행된 고지서의 날짜로부터 달력 기준으로 십(10) 일 안이 된다. 정정된 고지서가 발행되고 나서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정정된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달력 기준 육십(60) 일이 지나간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급수 서비스가 중단된다. 단, 이는 시에서는 위 섹션 II(B)(2)에 따른 연체 통보를 제공하고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는 상황에 해당한다.

2. (a) 문제의 수도 요금이 올바른 것으로 판정되면 수도 요금은 위에 정의된 납부 날짜 또는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리진 후 근무일 기준으로 이틀(2) 후, 둘 중 늦은 날이 납부일로서 결정된다.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소비자에게는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언이 제공된다. 그러한 모든 이의 제기는 그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구가 위 세부항 A 에 따른

초기 이의 제기이면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달력 기준으로 칠(7) 일 안에, 그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구가 위 세부항 B에 따른 연체 통보 이의 제기이면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달력 기준으로 삼(3) 일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의 제기에 대한 공청회는 소비자와 시가 다른 나중 날짜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번 정기 시의회에서 열린다.

(b) 위 세부항 A에 따른 초기 이의 제기의 경우, 소비자가 시의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의 수도요금은 즉시 납부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수도요금이 원래 고지서 날짜로부터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안에 전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위 섹션 II(B)(2)에 따라 연체 통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가정의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단계를 밟을 수 있다.

(c) 위 세부항 B에 따른 연체 통보 이의 제기의 경우, 소비자가 시의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음 중 나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적어도 이십사(24) 시간 후에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 후 해당 거주지에 대한 급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i) 연체 통보에 정해진 원래 달력 기준 육십(60) 일의 통보 기간 만료; 또는 (ii) 이의 제기 기간의 만료.

3. 시의회에서의 공청회를 요구할 때 그러한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청 서비스 관리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는 반드시 직접 시의회에 참석해서 문제의 고지서 수도요금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의회는 소비자가 제시한 증거뿐 아니라 문제의 수도요금에 관계된 시에서 가진 자료 정보를 평가하여 그 요금의 정확성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a) 시의회에서 문제의 수도요금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개정된 요금 청구서가 소비자에게 발행된다. 정정된 청구서가 발행된 후 정정된 요금이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미납되면 그 달력 기준 육십(60) 일이 지나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는 급수 서비스가 중단된다. 단, 시에서는 위 섹션 II(B)(2)에 따른 연체 통보를 제공한다. 급수 서비스는 미납 요금과 함께 해당하는 모든 재연결 수수료가 모두 납부되는 경우에만 재개된다.

b) 문제의 수도요금이 올바른 것으로 판정되면 수도요금은 시의회 결정이 내려진 후 근무일 기준으로 이틀(2) 후, 또는 원래 납부 날짜로부터 달력 기준으로 육십(60) 일 중 늦은 날이 납부일로서 결정된다. 연체 통보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으면 시의회는 위 섹션 II(B)(2)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체 통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가정의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단계를 밟을 수 있다.

c) 모든 과정금은 소비자의 다음번 일반 고지서에 크레딧으로 반영된다.

d) 소비자가 시 또는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급수 서비스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e) 시의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 V. 급수 서비스의 재개:

요금 미납으로 인해 시에서 중단한 급수 서비스를 다시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위 섹션 II(E)(1)에 정해진 한계에 따라 시의회에서 결의한 재연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가 신청하고 해당하는 재연결 수수료를 낸 다음 날이 지나기 전에 서비스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

#### VI. 언어 관련 고지 사항

이 규정과 통지서는 SB 998에 따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그리고 시의 서비스 지역 고객 중 십(10) 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VII. 소비자의 무단 행동

이 규정은 소비자의 무단 행동으로 인해 시에서 서비스 연결을 중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